

중등 교원 파면처분취소 청구 소송

소송종류	행정소송	법원명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 [1심]	사건유형	공무원신분
원고	○○○	피고	인천광역시 교육감
판결선고일	[1심]2021. 8. 26. 원고패	비고	
사건개요	<p>○ 원고는 중학교 교사이며, 같은 중학교에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준유사강간’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2020. 1. 17. 피고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게 2020. 9. 1.자로 파면처분 받음.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20. 12. 16. 기각결정됨.</p> <p>○ 원고는 이 사건의 형사재판으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도 동일한 형이 유지되었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진행중임. 아직 유죄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에게 징계가 확정된다면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원고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p>		
주 문	<p>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p> <p>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p>		
판결이유	<p>○ 징계혐의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징계사실 인정을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 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음.</p> <p>○ 이 사건 징계사유를 범죄 사실로 형사재판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대법원 상고심에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징계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그에 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이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p>		